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

의안 번호	2240
----------	------

2024. 12. 17.
주택공간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10. 16. 최기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. 10. 18.
-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4. 12. 17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최기찬 의원)

- 제안이유
 -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'연도별 층간소음, 층간흡연 민원 현황' 자료에 의하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 5천여 건으로, 20년 2만9천여 건에 비해 20% 가까이 폭증하는 등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생활주택에서 주민 간 지속적 갈등을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임.
 - 특히 층간 흡연의 경우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 방안이 없어 '층간 소음'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.

- 또한 층간소음과 달리 층간 흡연의 경우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간 갈등만 야기할 뿐 그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.
-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피해구제 및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6항의 신설).
-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2항제6호의 신설) .
-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신설).
- 간접흡연 피해 방지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표창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제2항의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윤은정)

-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,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공동주택 간접흡연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

‘법’)개정¹⁾과 2018년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개정²⁾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 또는 갈등해결과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< 개정안 주요내용 >

주요내용	개 정 안
간접흡연 방지 시장 책무 신설	제3조(책무) 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종합계획 수립 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신설	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6.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
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추진 신설	제7조의2(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) 4.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5.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
간접흡연 피해예방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신설	제17조(표창)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- 특히, 2017년 신설된 법 제20조의2에서는 입주자등³⁾과 관리주체의 자발적 노력을 권고할 뿐이고, 2018년 신설된 조례 제7조의2에서는 분쟁조정, 교육, 자치운영 등을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자발적 노력에

1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[법률 제14853호, 2017.8.9., 일부개정, 2018.2.10. 시행]

2)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[서울특별시조례 제6780호, 2018.1.4., 일부개정, 2018.1.4.시행]

3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입주자등”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

대한 사항만 명시됨에 따라, 간접흡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.

- 이에, 안 제3조제6항에서는 시장에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과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됨.
- 안 제4조제2항제6호는 “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”(이하 “종합계획”)에 ‘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’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들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,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- 안 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는 시장에게 “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”, “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”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민원사례 수집등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갈등 현황과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자치관리차원의 해결방안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.
-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은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발생을 예방하거나, 분쟁을 자발적으로 조정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려는 것으로, 주민과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, 주민 간 소통촉진을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건전한 주거문화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간접흡연과 관련된 표창조항은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기존 모범단지 표창에 관한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

제7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

5.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

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</u></p> <p>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</p>
<p>제7조의2(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) 시장은 공동주택의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의2(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</u></p> <p><u>5.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</u></p>

4. (생략)

제17조(표창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른다.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17조(표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